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6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지원 • 박홍배

추미애 • 송옥주 • 이재정

복기왕 · 맹성규 · 김 현

김병기 · 허성무 · 이광희

김남근 · 김 윤 · 권향엽

최민희 · 김성환 · 강유정

문금주 · 송재봉 · 김주영

이병진 · 임호선 · 황명선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, 감리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 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

이에 석면건축물 해체·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

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·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·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5항, 제30조의4, 제30조의6, 제31조제4항, 제47조의2, 제49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
- 2.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· 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4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5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

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"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5제1항"을

- "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판단하면"을 "판단하거나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해당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5제3항"을 "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주수"를 "주수 등"으로 한다.
 - 6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
 - 이 경우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 체 · 제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시정
- 제30조의6제1항제5호 중 "3회"를 "2회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 - 8.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
 - 9.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

받은 경우

- 10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
- 11.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

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중지 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, 감리원 현장 상주 의 거부,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·지체나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 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7조의2 중 "300만원 이하의 벌금"을 "500만원 이하의 벌금"으로 한다.

제49조제3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한다"를 "하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"로 한다.

- 9.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10.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게 불이익을 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	제30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
리인 지정 등) ① ~ ④ (생 략)	리인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
	<u> 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</u>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
	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
	도록 하여야 한다.
	1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
	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
	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
	<u>경우</u>
	2.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
	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
	해체·제거작업의 시정 또는
	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한
	<u>경우</u>
	3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
	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
	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	4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
	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

⑤ (생략)

- 제30조의4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저업무 등) ① 석면해체작업감리 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
 - 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 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(이하 이 조에서 "석면농도기 준"이라 한다) 준수 여부 관리

3. ~ 5. (생 략) <신 설>

<u>6</u>. (생 략)

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 해체·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 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<u>판단</u> <u>하면</u>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. <<u>후단 신설></u>

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
<u>경우</u>
5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
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
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세30조의4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
업무 등) ①
1. (현행과 같음)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
제1항
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석면해체・제거작업 감리의
완료보고서 작성
<u>7</u> 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
<u>판단하거</u>
나 석면해체・제거업자가 석면
<u>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</u> 규정이 내용에 저항하지 아니하
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는 어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

- 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시정 (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(생략)
-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 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(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③ (생 략)
-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반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

게 해당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---. 이 경우 석 면해체·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·제 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시정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<u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</u> <u>제3항</u>-----------
- ③ (현행과 같음)
- 4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----- <u>준수 등</u>-----

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 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

- 제30조의6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등록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2년에 <u>3회</u> 이상 영업정지 처 분을 받게 된 경우
 - 6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⑤ (현행과 같음)
제30조의6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
등록 취소 등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 2회

6. (현행과 같음)
7.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
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의
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
하여 제출한 경우
8.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
해체 · 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
<u>에게 게기ㅋㅂ여니게 네인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 제31조(발주자의 책임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제47조의2(벌칙) 제30조의4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한 경우

- 9.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,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
- 10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 를 부실하게 한 경우
- 11.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제31조(발주자의 책임 등) ① ~ 제31조(발주자의 책임 등) ① ~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 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 체작업감리인 변경, 감리원 현 장 상주의 거부, 감리대가 지급 의 거부・지체나 그 밖에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7조의2(벌칙) -----

인은 <u>300만원 이하의 벌금</u>에 처한다.

제49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9. (생략)
- ④・⑤ (생략)
-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 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 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500만원 이하의 벌금
제4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
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
10.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
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
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
해체작업감리인 변경 등 석면
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
<u>준 자</u>
<u>11</u> .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
6
<u>하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</u>
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
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

<u>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</u> <u>청할 수 있다</u>.